##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6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주철현 · 이병진 · 임호선

민형배 • 황명선 • 문금주

허 영・위성곤・조계원

박희승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지역조합 1천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지역조합 5억원 이상, 품목조합 3억원 이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기준,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한 조합은 총 110개 소로 전체 1,111개 조합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0개 조합 중 한 곳은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됨. 특히 지역축 협의 경우 조합원 수가 부족한 조합이 전체 116개소의 절반이 넘는 6 6개소로 기록됨.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어, 농가수 감소와 농촌고령화가 조합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임. 더구나 지역축협의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가축분뇨 규제 등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지방조례에도 구속되는 만큼, 설립인가기준이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 구성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0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를 "인가 절차에 관하여"로, "기준 및 절차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설립인가 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500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설립인가 기준) 제15조를 준용하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품목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지역농협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	
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	
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	
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	<u>인가 절차에 관하여</u>
<u>가에</u> 필요한 <u>기준 및 절차는</u>	<u>사항은</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5조의2(설립인가 기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의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u>한다.</u>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
	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500
	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
	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

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 진법」에 따른 섬지역 중 농 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 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제109조의2(설립인가 기준) 제15
조를 준용하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품목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은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신 설>